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보감회, 음주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마련
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임.
  - 보감회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도로교통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 공동으로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요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‘교통사고 책임보험 변동 요율제’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.
  - 이 제도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1회 당 10~15% 내에서 보험 요율을 인상하고, 만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20~30% 범위에서 요율을 인상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적 인상을 60%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음주 운전 행위를 연동시킨 것이 특징임.
  - 보감회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통사고 책임보험 변동 요율제를 엄격히 시행하되, 요율 적용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임의로 추가 혹은 차감 징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.
  - 또한 각 지역의 보험 감독국과 공안부가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요율 표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임.
  
- 보감회는 교통사고 책임보험 변동 요율제가 음주 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 - 교통사고 책임보험 변동 요율제가 도로 교통 및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
  - 이에 따라 보감회는 법률, 행정, 경제 수단을 결합된 교통사고 책임보험 변동 요율제가 음주 운전 관련 위법 비용 절감 효과 등 효율적인 음주운전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중국증권망, 2/12)